



▶ **Dead Parking**

차량의 장기적인 방치

▶ **Deductive Alternate**

기본입찰(Base Bid)의 감액(Deduction)을 초래하는 대체입찰(Alternate Bid)

▶ **De Facto**

라틴어이며 “사실상(의)”의 뜻

cf) De jure : 권리에 의한, 법률상(의)

- Ipso Facto : by the fact itself 사실 그 자체에 의해, 사실상
- Ipso jure : by law itself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 **Defective Work**

계약조건에 배치되는 공사(하자 있는 공사)

▶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DLC)는 하자책임완료

증명서이며, 전통적인 표현으로 Maintenance Certificate(하자보수증명서) 또는 Final Acceptance Certificate(FAC, 최종수락증명서)이다.

이 DLC는 시공자가 하자책임을 완료하였다고 판단 될 때 감독관이 발급하며, 공사를 최종승인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DLC의 발급이 잔여유보금의 해제에 대한 전제조건일 수는 없으며 둘째, 발주처나 시공자 모두 DLC 발급시점에 잔존했던 미수행 계약의무사항은 DLC의 발급과 관계없이 그에 대한 수행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둘째와 같은 책임으로 잠재적 하자에 대한 책임(Potential Defects Liability)이라고 하며, 비록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잠재하고 있었다면 그 하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의 책임사항이라는 해석이다. FIDIC과 ICE 등에서는 이를 Unfulfilled Obliga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보증서는 DLC발급후 14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반환하다(FIDIC)

▶ **Defects Liability Period**

공사가 실제적으로 완공(Substantial Completion)되어 준공검사(Test on Completion)를 통과한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현장인수증명서(Taking-over Certification)의 발급을 요청한다.

감독관은 실제적인 완공일을 명시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실제적인 완공일로부터 입찰서 후보(Appendix to Tender)에서 설정된 기간 동안 시공자는 공사상 하자에 대한 치유책임이 있으며, 이 하자책임기간을 DefectLiability Period(전통적인 표현은 Maintenance Period)라고 한다.

▶ Development

부지정지 : Site Development Work(부지정지작업)

▶ Direct Cost

직접비 : 직접비는 인건비, 자재 및 장비비, 하도급비 등과 같은 비용항목으로 이뤄진다.

▶ Dominant Estate

어떤 토지의 일부에 대한 사용상의 제한이 다른 토지의 소유주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될 때, 전자를 Servient Estate라 하며, 후자를 Dominant Estate라 한다.

▶ Duplex Apartment

한 다세대주택(Apartment Building)에서 분리된 주거공간으로, 복층아파트와 같다.

▶ Dwelling

한세대 또는 그 이상이 주거할 수 있는 건물. 상가나 업무용 빌딩이라기 보다 주거전용 건물을 Dwelling이라고 한다.

▶ Earliest Event Occurrence Time

CPM용어로서 결과에 선행하는 모든 Activities가 완료되는 가장 빠른 시점

▶ Early Start Time

CPM용어로서 한 activity상의 공종이 모든 선행 activity가 가능한 조기에 완료될 경우, 시작될 수 있는 공사상의 첫째 일

▶ Easement

- 통행권(right-of-way)이나 일조권(free access to light and air)과 같이 타인의 토지에서 취할 수 있는 권리
- 두 개의 부채에서 형성된 곡부
- 수직면이 굴곡진 계단난간의 부분

▶ Elevation

입면도

▶ Eminent Domain

토지 수용권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환경영향평가 :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의해 요구되기 시작했다.

▶ Equity

자산소유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권리의 가치로서 자산가치의 총액에서 선취특권이나 저강권이 설정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나타낸다. ㉠